

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(RISE)사업운영규정

5-1-74

규정번호	5-1-74
제정일자	2025.3.31
최근개정	2026.5.18
개정차수	4차 개정
관리부서	RISE 사업단

[전면개정 2025.6.23.]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이하 “RISE사업”이라 한다 - RISE : 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 -)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RISE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) 이 규정은 교육부의 “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”에 근거한다.

제3조(규정의 적용범위) 이 규정은 RISE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, 우리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조직 및 운영

제4조(사업단장) ① 총장은 사업단의 장(이하 “사업단장”이라 한다)을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사업단장은 사업전담조직의 관리 권한과 사업운영 책임을 갖고 RISE사업을 총괄한다.

③ 사업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과 관련한 우리대학의 각종위원회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.

④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부단장을 둘 수 있고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하며,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사업단)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업단 내에 사업기획관리팀, 전문기술인력양성팀, 평생교육·지역상생팀, AI학과지원팀, AI조기취업학과지원팀을 둔다.(개정 2026.3.23.)

③ 사업기획관리팀은 RISE사업 총괄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RISE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
2. 사업의 총괄 수행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74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(RISE)사업운영규정

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규정 정비
 4. 사업의 결과, 사업비 집행·관리·사용실적·정산 보고
 5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, 확산
 6. 사업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
 7. 기타 사업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전문기술인력양성팀, 평생교육·지역상생팀, AI학과지원팀 및 AI조기취업학과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26.3.23.)
1. RISE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 작성·제출
 2. 단위과제 수행
 3. 단위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체규정 정비
 4. 단위과제 수행의 결과, 사업비 집행·관리·사용실적 보고
 5. 단위과제 수행의 실적 및 성과의 홍보, 확산
 6. 기타 사업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⑤ 사업단 및 하부조직에 교원, 직원, 조교 등을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제 3 장 위원회

제6조(추진위원회)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내·외 전문가를 포함한 RISE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, 부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사업부단장으로 한다.(개정 2026.5.18.)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

④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추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(개정 2025.12.1.)
2. 사업비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3. <삭제(2025.12.1.)>
4.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RISE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RISE사업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, 당연직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74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(RISE)사업운영규정

위원은 사업부단장으로 한다.(개정 2026.5.18.)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회의를 진행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
2. 사업단, 전담조직, 지원조직 간의 RISE 사업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사업에 관련된 행정적, 재정적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
4. 사업운영 중 변경(예산 및 사업계획 등)에 관한 사항(개정 2025.12.1.)
5. 그 밖에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RISE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RISE사업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회의를 진행한다.

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(환류)에 관한 사항
2.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
3. 기타 사업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 부서 확인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9조(회의의 소집 등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고,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

제10조(사업비의 구성) RISE사업의 사업비(이하 “사업비”라 한다)는 RISE사업 국고보조금으로 한다.

제11조(사업비의 관리) ① 사업비는 RISE지원전략, RISE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」 및 「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」에 부합하도록 편성·집행하여야 하며,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」 별표2에서 정한 사업비 편성 항목별 사용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, 운영규정, 관리 지침, 서울시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, 별도 전담조직 또는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사업비의 변경) ① 단위과제 간 예산을 변경하거나, 사업비 항목 내·항목 간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「서울RISE센터」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, 각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「서울RISE센터」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복수의 기관이 협의체로 참여하는 단위과제의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, 협의체 구성기관 간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② 운영 전 사업비의 변경은 ‘추진위원회’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보고한다.

③ 운영 중 사업비의 변경은 ‘운영위원회’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보고한다.

④ 사업비 항목 간 변경 시 항목별 편성 비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사업비 변경내역은 해당 사업연도 연차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사업비 변경 불가) 사업비 변경이 불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계획서 상 제시했던 단위과제별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지표(목표)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
2. RISE기본계획 등에 따른 동일 프로젝트 내 단위과제가 아닐 경우
3. 단위과제 중 ‘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’의 경우
4. 성과급 및 간접비의 경우

제14조(집행절차) ① 훈령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사업비는 사업단에서 관리하며, 국고지원금은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.

② 사업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이하 “e나라도움”이라 한다)을 사용하고, e나라도움에서 규정한 방법을 통하여 적절하게 집행(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)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16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 관련 법률·법령·규칙·훈령 및 우리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74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(RISE)사업운영규정

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6조제4항제1호·제3호, 제7조제4항제4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되,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제2항·제4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되,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6조제2항, 제7조제2항)